#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0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 박상혁·강준현·최기상

강훈식 • 민병덕 • 전현희

김한규 · 황운하 · 노종면

윤준병 · 조승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대부의 중개·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 ·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 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대부중개를 하거나"를 "대부를 중개 또는 알선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중개·알선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대부중개를"을 "대부중개·알선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 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 ----대부를 중개 또는 알선하 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 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중개 • 알선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1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u>대부중개</u> • 알선을 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

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 9. (생략)

<신 설>

10. (생략)

⑤ (생 략)

\_\_\_\_\_

\_

7.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11조의2제8항을 위반하

여 타인에게 수집한 개인정보

를 제공한 자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